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반성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집회·시위·문화행사

기고

1인 시위 등의 차이란

이선진 나주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겸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집회 및 시위, 문화행사, 1인시위, 기자회견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사전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그 개념부터 알 필요가 있다.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만을 규정하고 옥내집회는 규제대상을 아님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문화행사’는 학술·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관혼상제·국경행사 등을 말하는데 이는 집회로 보지 않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문화행사라도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팅 및 행진을 하는 등 집회의 성격을 가진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

‘1인 시위’는 특정 장소에서 혼자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적은 피켓 등을 들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시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다수인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 시위를 방자한 ‘소위 인간 띠잇기’ ‘혼합 1인 시위’ ‘서로 10~30m 떨어져 1인 시위를 하더라도 사전 약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등은 시위로 보고 있고, ‘릴레이 시위’ ‘다수의 개별 1인 시위자가 모인 경우 공동의견을 대외에 표현하려는 행위가 아닌 경우’는 시위로 보지 않는다.

‘기자회견’의 경우도 구호제창·피켓팅 등 집회시위의 요소가 없는 순수한 기자회견은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자회견이라도 구호제창·플래카드·피켓팅을 지참하거나 기자회견 이외의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등 실질상 집회시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 집시법이 적용된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알고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꼬리표가 되는 학교폭력 모두 예외일 수 없다

기고

박은유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최근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폭력 예방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은 간단해 보이지만 잡시의 방임이 결집을 수 없는 나비효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논란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또 다른 가해 내용까지 폭로되며 미투(MeToo) 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인이 된 후에도 학교폭력의 꼬리표를 평생 떼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악의를 가지고 피해를 거짓으로 신고해 무고한 사람의 신상까지 파헤쳐지며 2차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연예인의 일반인 이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얼마든지 꼬리표가 될 수 있다. 어린 시절 잡시의 실수로 벌었던 학교폭력은 성인이 된 후 취업의 기회를 무산시키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구대에 근무하던 때 청소년의 학교폭력, 절도 등으로 신고 출동을 나가 부모님을 모셔오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구대나 경찰서에 처음 온 아이들은 보통 울먹거리거나 자신의 잘못을 바로 뉘우치고, 부모님들 역시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에 깜짝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러나 범죄가 두 번, 세 번 늘기 시작하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체포된 상태에서도 겁을 먹지 않고 ‘어차피 저는 소년원 안가요’라는 말과 더욱 대담해진 모습을 보인다. 부모님들 역시 ‘이제 모르겠다’, ‘포기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들의 잘못한 점을 바로잡아주고 교육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 수업 장기화와 대면 수업이 적어지면서 학교폭력 피해도 주춤했지만, 올해 3월 등교수업을 한 학교가 97%에 달해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미신고한 이유 중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9.4%),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17.4%) 등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아이들의 인지 교육과 신고 시 보복 등의 일이 없도록 경찰과 학교의 2차피해 방지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잡시의 실수, 또는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이 주변에 있다면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가르침으로 ‘학교폭력’이 아닌 ‘선도의 꼬리표’를 달아줄 수 있길 기대해본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